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: 하남시장(지역

경제과)

제출일 : 2025. 2.

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,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관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 명확화(안 제13조제1항)
- 나.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 완화(안 제14조)
 - 신청 구역 내 상인 및 토지·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해당구역 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
- 다.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완화(안 제15조)
 - 소상공인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 도록 한 기준을 완화(상업지역은 25개 이상,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)
- 라.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6조제1항)
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단서

규정 마련

- 마.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전문개정(별지 제1호서식)
- 바. 법제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본어 투 표현, 띄 어쓰기, 문장부호 등 정비(안 제2조의2~제4조, 제7조, 제9조~제9조 의3, 제13조, 제17조)
- 사. 조문 제목 신설(안 제4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 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(약칭: 전통시장법 시행령) [시행 2024. 9. 10.] [대통령령 제34886호, 2024. 9. 10., 일부개정]
- 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"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